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경쟁정책

박 찬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상무

1. 경쟁의 의의

일반적으로 '경쟁상태'란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상태를 뜻하며 그러한 시장을 경쟁시장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관련법은 이러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이 무한대로 풍족하여 가지고 싶은 자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상태라면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경쟁력도 필요없을 것이다. 태평양섬의 원주민들이 아직도 미개한 삶을 살고 있음에 반하여,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 것을 보면 경쟁이야 말로 인류역사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경쟁력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경쟁에서의 승리는 기업의 번영을 뜻하나 패배는 바로 기업의 몰락을 가져 온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무역수지는 적자가 되고 환율은 절하되면서 진로·기아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있는 것은 모든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경쟁촉진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관련법규들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경쟁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2. 우리 나라 공정경쟁법의 추이와 내용

우리 나라 최초의 공정경쟁 법규는 1973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유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법에는 판매거절금지 등의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주된 내용은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저가격지정 등의 물가안정을 위한 규정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정거래"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아직도 공정경쟁의 측면보다 물가안정이 강조되는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운용의 기본기조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되면서 오늘날 공정경쟁촉진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필자는 당시 경제기획원에 재직하면서 현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밑에서 동법초안을 입안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 사무실에 설명하려 갔었던 기억과 함께 그 당시 국(局) 단위였던 조직이 오늘날 장관급의 중앙부처조직으로 확대된 것을 보면 감개가 무량하다.

아무튼 '81년에 시행된 이 법은 5차('86, '92, '94, '95, '96)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공정경쟁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동법은 경쟁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력집중 억제를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① 경쟁제한적 법령정비,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③ 경제력집중 억제, ④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둘째,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서 ①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②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③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④ 불공정 국제계약체결 규제, ⑤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⑥ 불공정약관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정경쟁 정책에 대한 기업의 태도 변화

기업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난 뒤 최초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하여 잘 몰랐다. 단지 좀 귀찮은 법률이 제정되어 어떻게 잘 되어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는 적극적인 법 준수 방향으로 변모해 갔다.

하도급거래에서부터 기업은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어음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였고, 일방적 거래거절이나 일방적 가격인하 등 회사내 하도급 계약상의 불평등 조항들을 개선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리점과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과장광고 등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공급자중심 시장에서 수요자중심 시장으로 시장형태가 변화되면서부터 기업이미지가 중시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광고선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언론보도

는 물론, 신문의 사과광고까지 수반되므로 기업의 피해는 엄청나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벌금, 과태료 및 고발제도같은 강력한 규제조치가 있는가 하면 공정거래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을 주고 기업 PR도 해 주고 있다.

여기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업 내에 공정거래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사전예방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기업설립, 기업결합, 계열사 상호간의 거래, 하도급업체 관계, 대리점 관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 광고, 재판매가격 결정, 지급보증, 위장계열사 등의 공정거래법 규정은 기업활동과 직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대기업에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공정거래법 해설서나 회사내 대리점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작성지침서를 제작하여 관련 부서에 배포, 교육하고 있으며 공정정책관련 법률고문도 두고 사건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심사 지침"을 제정 공표하였을 때 동 위원회가 주최한 교육에 백명이 넘는 기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열심히 경청하는 것이나, 대우그룹이 담당사무관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는 것에서 기업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4.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의 재검토

오늘날처럼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있는가. 경제 비상시라고 볼 수 있다. 금년 들어서 한보, 기아 등 10대 재벌그룹도 부도가 나는 것을 보면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어지는 현상이 이제 우리 경제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업그룹 부도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은행융자(seed money)를 보장하면서 다른 기업이 매입토록 하여 부도 기업은 되살아나고, 계열회사 중 일부는 원사업주가 다시 경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개의 계열기업이 부도날 경우 지급보증을 한 나머지 전 계열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처리되고 전 계열사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WTO 체제의 출범 및 OECD에 가입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금지되고 오로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에 의해서만 기업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과거의 "소경쟁(小競爭)의 시대(時代)"가 지나가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품, 용역, 자본, 인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무한경쟁의 시대", "대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 "국경없는 경제적 상황(borderless economy)" 및 "하나의 세계시장"이 전개되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만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는 국제간의 "경쟁라운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공정경쟁 정책도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개혁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된 셈이다.

5. 공정경쟁 정책 결정시의 유의점(留意點)

공정경쟁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정책당국의 가치관(價値觀)과 기업에 대한 시각(視覺)은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경쟁 정책 결정시 정책당국이 어떠한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의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첫째, 공정경쟁 정책은 전체 경제정책의 일환(一環)이다. 기업은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사전에 조정되어 일관성 있게 시달되기를 기대한다. 대학과목에서 공통과목이 있고 전공과목이 있듯이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 목표인 수출증진이나 기업경쟁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앙부처 정책담당자라면 직접 수출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업무처리 결과가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함께 걱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영역만을 생각하고 수출이나 기업경쟁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중앙부처 어느 정책담당자의 업무처리 자세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더욱이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쟁 정책은 금융정책, 세제정책, 통상정책, 산업정책 등 일반 경제정책과 균형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경제정책과 유리(遊離)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된다면 기업은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71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경쟁 업무가 사법적 내용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一環)이라는 면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기업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은 국내외 전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상(急上)하는 현상을 보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다. 기업은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고비용 저효율은 물론이고 OECD 가입 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환경, 에너지, Recall, PL, 시장개방, 기술도입료, 노동문제 등 한꺼번에 엄청난 새로운 부담을 안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기업의 몰락은 금융몰락을 의미하고 금융몰락은 국가 신뢰도 상실을 가져오게 됨은 현재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실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은 소니, IBM, GM, 필립스 등 외국의 공룡기업과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 현재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우리 나라 기업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대기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규제에 열을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 볼 때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중 출자총액 제한이나 계열사 지급보증 제한 같은 규정은 시장 자율이나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모르며,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기업의 경쟁력측면보다 공정성측면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은지 재 검토해 봄직하다. 국가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공정경쟁 정책이 없는지 검토해 볼 때이다.

셋째, 공정경쟁 정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법의 제정 초기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했으며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횡포를 서슴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기업환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앞으로 리콜(Recall)제나 제조책임(PL)제가 정착될 경우 제품원가의 1~2%도 안되는 부품의 잘못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일방적인 상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이 어렵다고 대기업의 현금결제를 장려한 적이 있고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권유한 적도 있다. 약한 중소기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게 짐을 지우면 대기업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기업의 하향궁핍화(下向窮乏化)가 된다. 중소기업이 인력·기술·자금·경영능력 등 여러 면에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중소기업의 기본 경쟁력을 키워줌으로써 기업의 상향부유화(上向富有化)가 되도록 해야 국가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보다 더 높은 법으로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얘기한다. 국민정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방화 시대에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경쟁 정책은 기업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당국자는 변화무쌍한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공정경쟁 정책이 정해지면 무리한 요소가 개입되어 그것을 지키려다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거나 범법자인 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러므로 공정경쟁 당국과 기업간에는 평소 의사전달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공정경쟁협회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기업체 임원간의 협의체인 "공정거래법연구회"가 발족된 것은 잘 된 일이라 생각되며 기업의 실정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 정책의 「사전예시제」이다. 지금도 "법률안예시제"에 따라 시행은 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이해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상하(上下)관계도 아니고 경쟁관계도 아니다. 상호동반자로서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경쟁력은 살아날 것이다. 고객만족 시대에서 공정경쟁 정책의 고객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